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



목차

I.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일반 사항 03

1. 목적
2. 관련 규정
3. 시행 시기

II.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주요 내용 05

1. 표시 대상
2. 표시 방법
3. 위반시 제재

III. 질의·응답 07

I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일반 사항



1. 목적

- ◉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경우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이 있어, 내용량을 변경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식품 등에 대해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관련 규정

- ◉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1. 식품, 마. 내용량, 8)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마. 내용량

8)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변경 전의 내용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단위가격(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나) 내용량 변경(감소)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부터 제3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축산물 가공업 및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식품 등의 경우

- 라)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 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에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및 「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 급식 용도로 납품되는 식품의 경우

(예시)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3. 시행 시기

- 내용량 변경 사실의 표시 의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부터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에 적용함. 이때 수입하는 식품은 수출국에서 선적한 날을 기준으로 함

II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주요 내용



1. 표시 대상

-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함)하여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표시 제외 대상>

- 단위가격(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 내용량 변경(감소)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부터 제3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축산물 가공업 및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식품 등의 경우
-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에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 급식용도로 납품되는 식품의 경우

2. 표시 방법

표시 내용

I 내용량 변경(감소) 사실을 표시

- 내용량 ○○g (내용량 변경 제품, □□g → ○○g)
- 내용량 ○○g (내용량 변경 제품, △△% 감소)
- 내용량 ○○g (이전 내용량 □□g)

표시 위치

I 내용량 주위에 표시

* 주표시면 내용량 표시의 상, 하, 좌, 우 모두 표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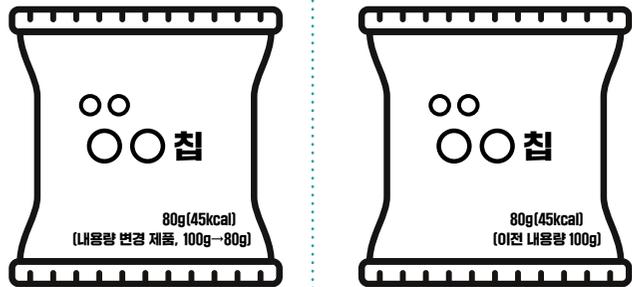
표시 기간

I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표시 방법

I 잉크·각인·소인을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함

<표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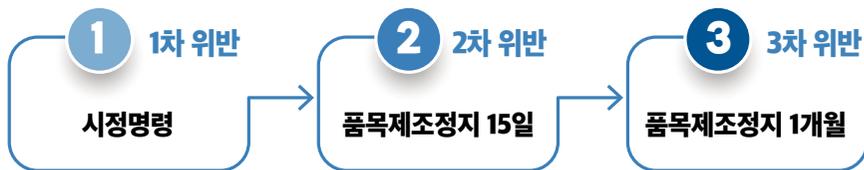


3. 위반 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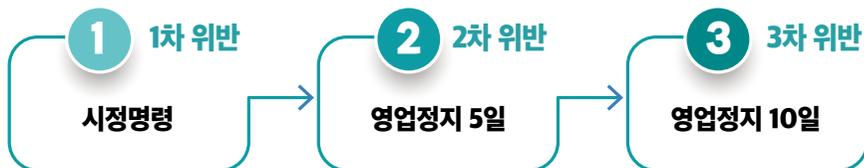
- ◉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대상이지만, 해당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

- ◉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의 경우



-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경우



Ⅲ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



Q1. 식약처 고시(「식품등의 표시기준」)와 공정위 고시(「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 식품등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공정위의 “용량 등 변경 사실 고지 가이드라인” 에서도 식품의 용량변경에 대해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고, 별도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Q2. 내용량 변경 사실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지?

- ☑ 「식품등의 표시기준」II. 공통표시기준에서 내용량은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량 변경 사실도 주표시면의 내용량 주위에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한글 스티커 등으로 표시한 수입식품의 경우 해당 한글표시사항 내의 내용량 표시 주위에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또는 한글로 인쇄된 용기·포장의 수입식품인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Q3.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할 때 글씨 크기는?

- ☑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개정 고시에서는 글씨 크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10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4.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를 스티커로 할 수 있는지?

- ☑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Q5. “내용량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의 의미는?

- ☑ 국내 제조·가공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제품의 제조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소분한 식품은 소분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수입식품은 수입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동안 표시하여야 합니다.

Q6. 내용량을 증가한 경우에도 표시 대상인지?

- ☑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는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한 경우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용량이 증가한 경우라면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Q7. 내용량을 줄이면서 제품의 가격도 낮춘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대상인지?

- ☑ 내용량을 줄이면서 제품의 가격을 함께 조정하여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Q8. 유통과정에서 단위가격이 변하는 경우 표시 대상인지?

- ☑ 단위가격은 100g(또는 100ml)당 가격을 의미하며,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고가격’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소분하는 식품의 경우 제조·가공 영업자 및 소분 영업자가 유통·판매를 위해 출고하는 가격을 말하며, 수입 식품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유통·판매를 위해 출고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영업자가 다수의 유통채널에 납품할 때 출고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라면, 유통채널 별로 각각 단위가격의 상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한 곳이라도 내용량 변경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면 유통채널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 전체가 표시 대상이 됩니다.

Q9. 유통과정에서 단위가격이 변하는 경우 표시 대상인지?

- ☑ 단위가격은 제조사 등의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통과정에서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Q10. 건강기능식품도 적용 대상인지?

-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며, 「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11. 기존 제품의 제품명 또는 용기·포장을 변경하면서 내용량이 감소된 경우 표시 대상인지?

- ☑ 기존 제품에 대해 단순히 제품명 또는 용기·포장을 변경하더라도, 내용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Q12. 유통전문판매업에서 기존 A 식품제조·가공업에 의뢰하던 제품을 다른 B 식품제조·가공업에 의뢰하면서 내용량을 줄인 경우 표시 대상인지?

- ☑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상표로 제조·가공·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의뢰하여 제조·가공하면서 내용량을 줄인 경우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Q13. 동일 제품의 내용량을 줄인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표시 대상인지?

- ☑ 동일한 제품이지만 기존의 내용량과 다른 내용량의 제품을 신규로 출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라면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이 경우 기존 내용량의 제품을 단종하거나, 생산하지 않거나, 수입하지 않는 등 기존 내용량의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는다면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Q14.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에서 개별 구성품의 중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표시 대상인지?

- ☑ '내용량'은 최소판매단위 제품의 내용량을 의미하므로, '내용량'을 기준으로 감소한 경우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Q15.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식품의 경우에도 적용 대상인지?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에 따라 표시사항의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으로 내용량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조·가공 또는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및 축산물 등

Q16. 행사 기획 상품으로 내용량을 증량 후 행사 종료 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 표시 대상인지?

- ☑ 행사 기획상품으로 한시적으로 출시하는 제품이고, 기획상품에 대해 '추가 내용량 증정'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라면, 행사 종료 후 다시 원래의 내용량으로 되돌리더라도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